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5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17.)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3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 축조심사

제4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11.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11. 21.)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권칠승의원)

현재 창업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투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펀드는 한국벤처투자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자조합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짐.

법 제70조제4항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대통령령은 이를 30년으로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벤처투자모태조합은 2035년에 종료될 예정으로, 자조합을 통하여 인공지능 등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모태조합과 자조합의 존속기간 역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을 법률에서 정하면서 이를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현행 2035년까지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 또는 “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0조).

2005년 결성된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¹⁾에 따라 30년이기 때문에 모태펀드는 2035년에 청산될 예정인데, 자펀드가 통상 8년~10년 운용²⁾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6년 결성된 만기 10년 자펀드는 존속기간 중 모펀드가 청산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개정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발전과 모태조합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됨.

최근 벤처펀드 결성 실적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성 규모는 2021년 17조 8,481억원에서 2024년 10조 5,550억원으로 40.9% 줄었고, 결성 펀드 수는 2021년 1,198개에서 2024년 811개로 32.3% 감소하였음.

개정안에 따라 모태펀드를 2035년 이후까지 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안정적 존속기간이 보장되면 모태조합 → 자조합 → 피투자기업 → 회수로 이어지는 전체 벤처투자 사이클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고 민간펀드 조성에 긍정적 신호를 전달하는 등 효과가 기대됨.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④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② 법 제7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 이내를 말한다.

2) 조기 청산이 가능하지만 평균 IPO 소요기간(2023년 기준 15.5년,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을 감안할 필요 있음.

2020~2024년 벤처펀드 결성 실적

(단위: 억원, 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결성금액	99,859	178,481	176,401	130,328	105,550	△19.0%
벤처투자조합	68,645	95,490	110,634	68,031	57,571	△15.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31,214	82,991	65,767	62,297	47,979	△23.0%
결성펀드 수	650	1,198	902	859	811	△5.6%
벤처투자조합	206	404	380	290	286	△1.4%
산기술사업투자조합	444	794	522	569	525	△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다만, 개정안은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년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연장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절차가 부재하고 총 60년(기존 30년+연장 30년)의 존속기간 상한 이내라면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행정부 자율적 판단만으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사전보고 등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 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장의 전체 상한(30년)을 두기보다는 정책 필요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